

상품공시 이용 메뉴얼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및 금리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바로가기](#)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내 예금금리 비교공시 [바로가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내 대출금리 비교공시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바로가기](#)

금융계산기를 이용하여 만기예상금액 등을 설계해 보세요!

예금액, 이자방식, 기간, 금리 등을 선택하여 월납부액 또는 만기예상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내 금융계산기 [바로가기](#)

자격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내 대출상담사조회 [바로가기](#)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기관인지,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예금자보호제도 [바로가기](#)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 민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민원센터 ☎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바로가기](#)

▣ 예금자보호제도

*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 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원(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 상 품

◆ 비과세종합저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 보통예금

◆ 거치식 예금

나. 정기예금

다. 표지어음

라. 자유적립예금

◆ 적립식 예금

마. 정기적금

바. 신용부금

▣ 비과세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거래할 수 있음

◆ 가입대상

- 만 62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소년소녀가장 등

◆ 가입한도

- 1인당 5천 만원 이내

◆ 세금혜택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5,000만원 한도 내)

◆ 예금자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상시보호

◆ 특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예치기관에 불구하고 만기, 중도 해지이자에 대해 비과세
- 대상저축상품 중복가입 가능
-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대상예금

- 당사 전 예금상품

▣ 보통예금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이율

-연 0.1%

◆ 특징

- 입출금이 자유롭다.
- 예금거래 대상, 금액, 기간 등에 제한이 없다.
- 소정의 이자를 부리한다.
- 양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된다.

◆ 예금자보호여부

- 상시보호

◆ 현금카드 발급

-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현금카드가 발급되며, 전 금융기관 CD기, ATM기에서 인출가능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대아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전에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07. 1. 1)

③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서명 또는 인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상호저축은행은 부기금액과 상관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상호저축은행이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될 것이 틀림없음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이나 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이자를 찾을 때는 그 약관 또는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 (세제혜택상품) 만기일이 토요일(법정공휴일인 토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로서 거래자가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이외의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은 적용대상이 아님.

③ (일반과세상품) 만기일이 휴일(저축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로서 거래자가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상호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상호저축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외에 상호저축은행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 서면통지 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면책)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 비밀보장) ① 상호저축은행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 변경)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및 기타 약관을 바꿀 때에는 이를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거래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 기간 안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약관적용의 우선순서) ①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③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이자)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②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한다. <개정 01.6.10>

제3조(거래중지계좌) 상호저축은행은 이 예금의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거래중지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거래를 제한하며 1년이상 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생계형저축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기에금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한도

- 건당 10만원 이상

◆ 예치기간

- 1개월 이상 3년 이내

◆ 특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월이자 또는 복리이자 지급 가능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 하는 것이 유리함.
- 정기에금을 담보로 통상 예금 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예금자보호여부

- 상시보호

▣ 표지어음

저축은행이 기업 등으로부터 매입한 할인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이며, 6개월 이내의 단기 여
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예치한도
 - 건당 100만 원 이상
- ◆ 예치기간
 - 7~180일 이내
- ◆ 특징
 - 생계형저축(비과세) 가입 가능
 - 중도환매 가능하며, 만기경과 후에는 이자는 없음
 - 어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통장으로 거래 가능
 - 금융기관이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정성이 높다.
 - 저축은행이 승인한 경우에만 질권 설정 가능
- ◆ 예금자보호여부
 - 상시보호

▣ 자유적립예금

일정기간 동안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로이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예치한도
 - 1천원 이상 계약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 가능
- ◆ 예치시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월 단위
- ◆ 이자율
 - 정기예금 금리와 연동
- ◆ 예금자보호여부
 - 상시보호

거치식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자유적립예금과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 ①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③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장기예금으로의 재계약과 이자) ①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갱신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갱신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갱신한 예금을 갱신으로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초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다만,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당초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초 예금일부터 갱신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최초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제5조(무기명식 예금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예금은 무기명으로 예금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무기명식 예금증서의 면책) 상호저축은행이 무기명식 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이자 포함)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 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이 예금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은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금기간 : 1년이상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을 포함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이내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거래처가 다

른 금융 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생계형저축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거래할 수 있다.

②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기적금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부금을 납입약정일에 1회씩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한도

- 건당 1만원 이상

◆ 예치기간

- 1년 이상 5년 이내

◆ 특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유리함
- 정기적금을 담보로 불입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예금자보호여부

- 상시보호

▣ 신용부금

일정한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계약금액을 지급받으며, 총 납입회수의 1/3이상 부금납입시 (대표이사 승인시 1/3회차 미만 가능) 계약금액 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

◆ 계약대상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예치기간

- 월부금식 : 6개월 이상 5년까지 1개월 단위
- 일부금식 : 매일 적립하여 3년 이내(보통 100일)

◆ 특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부금 1회차 불입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금리 외에 특별금리를 가산하여 만기에 지급
- 부금을 1개월 이상 선납시 선납이자 지급

◆ 예금자보호여부

- 상시보호

적립식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①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거래처가 제1항의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제4조(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에 입금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제5조(만기앞당김 지급) 이 예금중 자유적립식을 제외한 신용부금과 정기적금은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6조(이자 등)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②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③거래처가 만기일 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④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⑤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4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01.6.10>

⑥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자유적립식예금 특례) ①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③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적금,신용부금 등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01.6.10>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다.

1. 예금기간 : 1년이상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을 합하여 원금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이내
-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생계형저축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②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 ③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 ④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상호저축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예 금 상 품 금 리

(기준일자:2016/10/01)

(단위 : %)

	계약기간	만기(세전)	중도	만기후
정 기 예 금 (복리정기예금)	1월이상~2월미만	0.7	0.5	*만기후 3개월까지는 약정금리 범위내에서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현행 이율 *3개월 이후 0.1
	2월이상~3월미만	0.8	0.5	
	3월이상~6월미만	1.1	1.0	
	6월이상~12월미만	1.1	1.0	
	12개월	1.70(1.71)	1.0	
	12월초과	1.5	1.5	
자유적립예금	정기예금과 동일			
표지어음예수금	7~29일	0.7	0.5	*만기후이자없음
	30~90일	0.8	0.5	
	91~179일	1.1	1.0	
	180일	1.1	1.0	
수 입 부 금	100일	1.72	0.5	0.5
	6개월	1.72	0.5	
	12~60개월	1.72	1.0	
정 기 적 금	12개월	2.0	0.5	0.1
	24개월	2.0	1.0	
	36개월	2.0	1.0	
보 통 예 금	0.1		*와이즈보통예금은 체크카드 발급자의 한해서 개설	

예 금 관 련 수 수 료

구 분	접수대상	수수료
제증명발급	* 잔액,부채증명 * 질권설정 * 기타증명서.확인서 단, 세금우대해지확인서 제외	장당 2,000원(추가발급500원) 신협,새마을금고 등
제증명발급	* 금융거래조회서	일반용 2,000원 외감용 5,000원
통장.카드 재발행수수료	* 제사고 및 변경 사고로 인한 재발행	통장개당 2,000원 카드개당 1,000원 인감변경 500원
주식납입금 보관수수료	* 자본금증자 및 신규 설립시 대행	건당 5,000원

상호저축은행환 / 타행환수수료

구 분	타 행 송 금	프 리 뱅 킹	당 좌 . 가 계 약 속 어 음	송 금 비 고	
10만원이하	2,000	300	2,000	* 계열사 및 500만원초과 : 건당1,000원 * 당 행 거래 고객일 경우 송금 수수료 면제	
50만원이하			3,000		
100만원이하			4,000		
300만원이하	4,000 (1억한도)	700	5,500		
500만원이하			800		7,000
700만원이하			900		8,500
1000만원이하			1000		10,000
1000만원초과			1200		11,000

대출 상품

◆ 담보대출

- 가. 부동산담보대출
- 나. 예적금담보대출

◆ 신용대출

- 다. 직장인 신용대출
- 라. 사업자 신용대출

▣ 부동산 담보대출

◆ 상품소개

-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대출자격

- 부동산을 담보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금액

- 개 인 (최대 8억원)
- 사업자 (최대 29억원)

◆ 대출기간

- 1년 ~ 3년 (연장가능)

▣ 예적금 담보대출

◆ 상품소개

- 당행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대출자격

- 당행의 예적금 가입 고객

◆ 대출금액

- 담보 예적금의 90%까지

◆ 대출기간

- 담보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 직장인 신용대출

- ◆ 상품소개
 - 직장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대출자격
 - 근로소득자, 공무원, 전문직
- ◆ 대출금액
 - 3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1년 (연장가능)

▣ 사업자 신용대출

- ◆ 상품소개
 - 사업자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대출자격
 - 개인사업자, 법인
- ◆ 대출금액
 -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1년 (연장가능)

대출시 유의사항

- 5천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발생하며 비용은 고객님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담보대출의 경우 설정시 소정의 고객님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시 대출취급전 고지해 드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대출 만기 후 기간 연장시 고객님의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회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및 매달 납부하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대출취급시 고지해 드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은 물론 법적절차 등을 통한 재산상의 불이익 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후 금리 인상시 저축은행은 서면 이메일 SMS 등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대아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⑤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

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⑧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 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을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②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저축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된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저축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06.7.10>

③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

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총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총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총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총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총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익을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총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총당순서를 법정총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총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총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총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총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상환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종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

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대출 상품 금리

(기준일자:2016/10/01)

구분	상품명	금리 (%)		대출 기간 (년)	수수료(%)		연체이율 (%)	
		최저	최고		취급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상품	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3.5	12.8	1 ~ 3	-	3년이내 상환시 상환잔액 * 2% * (잔여일수/3년)	22~24
		예적금담보대출	예금이율 + 1.5		예금 만기일 이내	-		22~24
	신용대출	직장인신용대출	8.5	23.0	1	-		22
		사업자신용대출	8.5	23.0	1	-		22~27.9